

2013. 05. 23.

##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비고
1502	(1)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03	(2)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504	(3)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05	(4)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6	(5)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5.15	2013.05.15	2013.05.22	2013.05.22	총무과장
(2)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013.05.15	2013.05.15	2013.05.22	2013.05.22	기획감사과장
(3)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05.15	2013.05.15	2013.05.22	2013.05.22	종합민원실장
(4)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5.15	2013.05.15	2013.05.22	2013.05.22	세정과장
(5)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5.15	2013.05.15	2013.05.22	2013.05.22	체육진흥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13.1.9)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과 서울사무소 등 근무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 신설
  - 월 25만원(안전행정부 권고 금액임)
- ※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11.12.16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월 20만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월 5만원, 1992. 4. 25~) 수준을 감안하여 지급액 산정

-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 규정 신설
  - 월 30만원(영 별표14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개정 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2)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 인용법 개정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한꺼번에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외 69개 조례 정비
  - 인용법 개정 등의 사항 반영

## **(3)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 행정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원상담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 편의 제공을 극대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자격, 임기(안 제2조, 제3조)
- 임무(안 제4조)
- 근무시간(안 제5조)
- 해촉,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6조, 제7조)
- 실비 보상(안 제8조)

##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세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납세자가 과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안 제14조와 안15조)
  - 과세특례(과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고시 절차 간소화(안 제1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면 재산세 부과 도시지역 고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재산세(주택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기준 금액 상향(안 제16조)
  - 연세액 5만원 이하 → 연세액 10만원 이하

## (5)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권투 꿈나무 육성과 '일등 스포츠시티 충주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권투선수단 창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에 '권투 선수단'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설치 종목에 '권투 선수단' 추가(안 제2조제1항)
  - 개정 전 : 배드민턴, 조정, 육상 선수단
  - 개정 후 : 배드민턴, 조정, 육상, 권투 선수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과 서울사무소 등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간호직에 준하여 월 5만원 지급하였으나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 지급액을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16일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월 20만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5만원) 수준을 감안하여 25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4조에는 서울사무소 등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3호에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신설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고 사료됨.
- 다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에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조례 중 인용법 개정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3)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원상담 위원을 위촉하여 민원인을 위한 상담과 안내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고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서 있어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민원상담위원의 위촉과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14조 후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면 재산세 부과 도시지역 고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항에 직장운동경기부의 기존 종목인 배드민턴, 조정, 육상 선수단과 더불어 권투 종목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 권투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해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 답변 요지**

###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규정은 2013년 1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 개정이 늦은 이유는 ?
- 답변 : 공문이 1월 말에 시달돼서 법령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늦어짐.
- ▶질의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도내 중 소급 적용한 곳이 있는가?
- 답변 : 음성군이 있음.

(2)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질의 : 없음.

(3)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질의 : 민원상담위원은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가능하지 않는가?

○답변 : 행정에 대한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행정상담이 가능하고 복합민원 등이 대상이 되므로 일반자원봉사자가 상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행정공무원 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음.

▶ 질의 : 민원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되었는데 일비을 지급하는 것이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가?

○답변 : 법령상 상충되는 사항은 없다고 봄.

▶ 질의 : 민원상담위원의 운영 방법은?

○답변 : 8명을 위촉해서 1주일에 4일을 2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단서를 신설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답변 : 지형도면 고시지역을 그대로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검토가 미흡한 상황이었음.

(5)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권투 종목이 신설되는데 몇 명인가?

○답변 : 지도자 포함해서 5명임.

▶ 질의 : 선수는 계약이 되어 있는가?

○답변 : 이달 말까지 지도자 공고를 마쳐 6월 1일자로 임명하여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창단할 계획임.

## 5. 심사결과

-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소급적용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 규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 (2)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3)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민원상담위원 임기 변경 : 2년 → 1년
-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안 제14조제1항 후단 삭제
- (5)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6. 붙임

-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2)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3)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정안	수정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신설>	부 칙 ----- .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는 2013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임기) 상담위원의 임기는 <u>2년</u> 으 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 능력이 뛰 어나 연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면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 <u>1년</u> -- -----. ----- -----.

##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p> <p>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 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용도 지역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결정된 지역을 지형도면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p> <p>② (생략)</p>	<p>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p> <p>① _____ _____ . &lt;후단 삭제&gt;</p> <p>② (개정안과 같음)</p>